접 수 의안과 - (20 . . . :)

수신 : 의 장

제 목: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2월 16일

청 원 인

성 명: 최서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78 전 긴	성명 : 최서현	
건 명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2월 16일	

- 소개의견

본 청원인 '최서현 외 15명'은 제 18회 임시회의 & 청소년 국회 소속 학생권익위 원회 의원입니다. 2016년 2월 제 18회 임시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2015년을 시작으로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환경 및 여건 개선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 712만 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는 40만 명으로 청소년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에 비해 관리는 소홀시 되고 있습니다. 부천의 토막 살인사건과 같은 문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빈약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이러한 지표가나타나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기간의 공백이 너무 길어, 환경 및 여건 개선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제 18회 임시회의 & 청소년국회 소속 학생권익위원회 의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최소 1년에 1번 시행하자는 법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청원서

1. 제안이유

학교 박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등 일반적인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충분한 고려 없이 자퇴를 선택한 후, 갈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도 학교에는 재학중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자, 학생들로써 정부가 책임지고 학교 밖에서도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며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매우 소홀한 상태이며, 실태조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6년 1월, 부천에서 죽은 학교 밖 청소년 중 하나였던 초등학생이 화제가 되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 달 만에 모습을 감춘 후 4년 만에 죽은 채로 냉장고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에 처음으로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에 대해 표본 조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나 주거지가 불분명한 청소년들등 실태조사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 총 약 40만명 중에 5130명을 표본 조사하였다. 이는 전체 인원 중 약 1.28%로, 아무리 표본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사대상이 매우 부족하다. 이처럼, 부천에서의 초등생살인 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사실 또한 실태조사가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태조사의 미비함과 허술함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조금 더 빈번하게 이루어 져야 함을 청원하는 바이다.

2. 주요골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문대조표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 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하여 최소 1년에 1번 학교 밖 청소 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청원인 성명 : 최서현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刊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ㅇㅇ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 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